

중소벤처기업부훈령 제155호

##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훈령

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5항제2호 중 “소자장비”를 “소자장비(자성 제거 장비)”로 하고,

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“천공”을 “천공(구멍 뚫기)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개인정보의 파기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중소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전용 <u>소자장비</u>를 이용하여 삭제</p> <p>3. (생략)</p> <p>⑥ 중소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, 제5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제1호 외의 기록물, 인쇄물, 서면,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: 해당 부분을 마스킹, <u>천공</u> 등으로 삭제</p>	<p>제18조(개인정보의 파기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 <u>소자장비(자성 제거 장비)</u>----- 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천공</u> <u>(구멍 뚫기)</u> ----- -----</p>